

보증상품 주요 개선사항('14. 9월)

1. 전세보증금반환보증 [9.16일 시행]

- 정부가 발표한('14. 9. 1.) 「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」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깡통주택으로부터 서민의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세보증금 지역별 한도 제한을 완화

구분	기 존	개 선
수도권	3억원	4억원
그 외 지역	2억원	3억원

2. 모기지보증 [9.16일 시행]

- 정부가 발표한('14. 9. 1.) 「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」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미분양 주택의 전세 주택 활용을 유도 하기 위하여 모기지보증의 업체별 보증한도를 확대

구분	기 존				개 선			
	AA이상	A ⁺ 이상	BBB ⁻ 이상	BB ⁺ 이하	AA이상	A ⁺ 이상	BBB ⁻ 이상	BB ⁺ 이하
보증한도	4,000억원	3,000억원	2,000억원	1,000억원	5,000억원	4,000억원	3,000억원	2,000억원

3. 임차료지급보증 [9.1일 시행]

- 임차료 지급보증의 보증신청인 및 보증대상을 확대

구분	기 존	개 선
보증신청인	임차인	임대인, 임대관리업자까지 확대
보증대상	공동주택, 오피스텔	단독주택 및 다가구 주택까지 확대

4. 정비사업대출보증 [9.16일 시행]

- 정부의 주택금융 정책을 지원하고,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 및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**보증한도를 확대**

기존	개선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▶ 이주비대출보증-조합원별 종전 토지 및 건축물 평가액의 60%이내▶ 부담금대출보증-조합원 부담금의 60% 이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▶ 이주비대출보증-조합원별 종전 토지 및 건축물 평가액의 70%이내▶ 부담금대출보증-조합원 부담금의 70% 이내